

#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

신설 2021.4.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에 따라 호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하“미래융합대학”이라 한다.)에 소속된 학과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서대학교 학칙」 등 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유연학기제)** ① 미래융합대학은 3학기 이상 운영이 가능하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도 있다.

② 교과목이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학기와 졸업반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학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집중이수제)** ①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강의시간만 준수하면 학기에 구애받지 않고 4주, 8주 등 학칙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집중강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말이나 야간 등 수업개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집중이수제로 신청한 학점에 대하여 등록, 등록금, 수업 및 성적평가 등의 제반 사항은 주간 정규과정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입학자격)** ① 미래융합대학의 입학자격은 해당년도 모집요강에 따른다. (개정 2023. 2. 6.)

1. <삭제 2023. 2. 6.>

2. <삭제 2023. 2. 6.>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과배정)** <신설 2025. 5. 14.> 미래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 중심의 학생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학과를 배정한다.

1. 1차 배정: 신입학전 학과배정을 위한 절차(교육과정 설명, 면담 등)를 시행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정

2. 2차(최종) 배정: 입학후 1개 학기 종료후 학과배정을 위한 절차를 시행하고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정

**제7조(전과)** ① 미래융합대학의 전과 변경은 학칙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의 전과는 계열구분 없이 허용하되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부(과)로 한정한다.

③ <삭제 2024. 1. 31.>

**제8조(휴학)** ① 미래융합대학의 휴학은 학칙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입학 후 1년간은 질병, 입대사유 이외의 휴학을 할 수 없으나,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① 미래융합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교양과정 교과목의 졸업필요 학점은 30학 점 이상으로, 전공교육과정 교과목의 졸업필요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 2. 6.)

③ 미래융합대학 이수학점은 학칙시행규칙 <표-교육1> 교육과정표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출석수업, 비출석수업, 출석수업과 비출석수업을 혼합한 수업 및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출석수업은 교내에서 주말 또는 야간에 하되, 필요에 따라 교외의 고정강의실, 근무지 강의, 이동강의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비출석 수업은 음성강의(AOD : Audio on Demand), 동영상 강의(VOD : Video on Demand), 원격수업, K-MOOC, H-MOOC 등의 온라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출석수업과 비출석 수업을 혼합한 수업방식(Blended & Flipped Learning)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과별로 현장실습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수업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수업개설 기준)** ①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학년별 재학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2. 필수교과목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2조(수강신청 학점)** ① 학생이 신청 가능한 최대 수강학점은 정규학기 18학점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② <삭제 2023. 2. 6.>

③ <삭제 2023. 2. 6.>

**제13조(학습경험 및 다른 기관·과정의 취득학점 인정)** ① 미래융합대학 학과의 해당 전공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 국내외 다른 대학, 평생학습관련기관(평생교육원), K-MOOC 강좌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각 학과 전공 교수의 협의를 통하여 인정 받을 수 있다.

② 취득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

1.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
2. 미래융합대학 입학 전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3. 미래융합대학 입학 전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그 내용이 전공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점
4.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 (개정 2023. 2. 6.)

- 인정 자격의 종류와 자격 학점은 아래 <표-1>을 따름

5. 미래융합대학 입학 후 이수한 K-MOOC 강좌에 따른 학점

- ③ 학습경험 및 다른 기관·과정의 학점인정은 미래융합대학이 개설·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3. 1.)
- ④ 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지 않은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전공교수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3. 1.)
- ⑤ 미래융합대학의 학점인정은 학칙 시행규칙 <표-인정1>과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 제 13조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근무경력에 따른 학점인정은 6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3. 1.)
- ⑥ 제13조 제2항 1호와 4호의 기간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3. 1.).
- ⑦ 학점인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수강신청에 포함한다. (신설 2023. 2. 6.)

**제 14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15조(졸업요건)** ① 졸업을 위해서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② 졸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3. 1.)

[조 명칭 변경 2022. 3. 1.]

**제 16조(조기졸업)** 미래융합대학의 조기졸업은 학생이 정규학기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105 학점 이상(졸업요구학점 120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성적평점평균이 4.0(A<sup>o</sup>)이상 이어야 하며, 그 외에는 학칙시행규칙 제3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2. 3. 1., 2024. 1. 31.)

**제 17조 <삭제 2022. 3. 1.>**

**제 18조(편입학생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① 편입학생의 전적학교 학점인정은 졸업 필요 학점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② 편입학생은 재학 중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일반교양 6학점, 일반선택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생은 제13조(학습경험 및 다른 기관·과정의 취득학점 인정)와 제16조(조기졸업)에 따른 학점인정과 조기졸업이 불가하다.

④ 전공 및 일반교양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3. 2. 6.)

[조 신설 2022. 3. 1.]

**제 19조(위원회)** 미래융합대학 내에 다음 각 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
2. 졸업사정위원회
3. 전공교육과정위원회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조 신설 2024. 1. 31.]

**제 20조(융합트랙)** ① 미래융합대학 융합트랙의 이수자는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에 한 한다.

② 융합트랙의 참여학과 및 교과목 이수 기준은 <표-2>를 따른다.

[조 신설 2022. 3. 1.]

[조 변경 2024. 1. 31.]

**제21조(마이크로디그리)** 미래융합대학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는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에 한해 이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 2. 6.]

[조 변경 2024. 1. 31.]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미래융합대학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2023. 2. 6.)

[조 변경 2024. 1. 31.]

#### 부 칙(202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23.0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선행학습경험인정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2020학년도 입학생이 선행학습경험인정제로 한 학기에 3학점 이상 인정받는 경우, 학기당 최대 21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 부 칙(2024. 1. 3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 5. 1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표-1>

학점인정 자격

구 분	학점인정 자격 명	인정학점	비 고
안전공학과	안전 관련 지도사 및 기술사	12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산업위생공학, 직업환경의학, 작업환경공학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및 소방시설 관리사	9	
	안전 관련 기사	6	
	안전 관련 산업기사	3	
기계ICT 공학과	기계 및 ICT 관련 기술사	12	기계, 정보/통신, 환경/안전관리
	기계 및 ICT 관련 기능장	9	
	기계 및 ICT 관련 기사	6	
	기계 및 ICT 관련 산업기사	3	
사회복지 상담학과	청소년 상담사 1급	12	상담
	직업상담사 1급	9	상담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6	사회복지, 상담
	청소년 상담사 3급	3	상담
기계반도체 공학과	기계 반도체 및 ICT 관련 기술사	12	기계, 반도체, 정보/통신, 환경/안전관리
	기계 반도체 및 ICT 관련 기능장	9	
	기계 반도체 및 ICT 관련 기사	6	
	기계 반도체 및 ICT 관련 산업기사	3	
스마트경영 학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구매자재관리사(TOP)	12	경영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구매자재관리사(부분별),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부분별), 손해평가사	9	
	정보처리기사, 유통관리사 1급,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사회조사분석사 1급, 국제금융역	6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보험중개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재경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2급, 신용관리사, 신용상담사	3	

<표-2>

융합트랙 교과목 및 이수기준

트랙명	개설교과목		이수기준	
	개설전공	교과목명	복수전공 (32학점)	부전공 (21학점)
ICT사회 환경	안전공학과	가스안전공학, 화재조사, 산업환기공학, 공업수학, 연구실안전, 소방안전실무,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화학공정안전	최소 32학점 이상 수강	최소 21학점 이상 수강
	기계ICT 공학과	컴퓨터과학기술, 기술아이템전략, 기계ICT융합론, 모빌리티공학개론, 공업역학, 제품설계개론, 로봇융합개론, 메카트로닉스공학		
	사회복지 상담학과	여성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청소년 교육론, 아동교육론, 노인교육론, 교육복지론		